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자치행정과장 : 윤성신 / 자치운영팀장 : 김순미 / 주무관 : 행정 7급 손유화】 【자치행정과장 : 윤성신 / 주민지원팀장 : 박미혜 / 주무관 : 사회 6급 이인선】

연락처(窓) : <u>2600-6707, 6442</u>

—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-

- (4)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운영비를 주민자치회 위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주민자치회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
 - 생활민원기동대 지원 확대 필요성 및 운영 확대 시 예상되는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침범 여부 및 정도

□ 답변내용 -----(자치행정과)

-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-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운영비는 회의 참석 위원에게 1회당 20,000원을 개인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해당 정기회의 운영비는 『지방회계법』 제33조(지급명령의 제한)에 의거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본인이 아닌 주민자치회에 지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소통하며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-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은 2023년 4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서비스 막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
- 현재는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2024년에는 채용된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,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의 주거 불편 사항을 개선해드리고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생활민원 기동대에서 주로 지원하는 콘센트, 형광등, 수전 등의 교체를 위한 재료는 관내 소규모 철물점, 조명가게에서 다양하게 구매하고 있 으며.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